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 I .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1444호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다. 제출일자 : 2016. 10. 31.

라. 회부일자 : 2016. 11. 3.

## II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 III. 주요내용

#### ○ 취득(학교신설)

연번	기관명	소재지	재산의 구분	면적 (㎡)	금액 (천원)	소속 기관
1	(가칭)양재유치원	서초구 양재동 101	토지	476.0	-	강남서초
			건물	1,865.5	1. 3,398,941	
			소계		2. 3,398,941	
2	(가칭)서울향동초등학교	구로구 향동 160	토지	9,901.0	21,140,956	남부
			건물	12,216.0	18,457,000	
			소계		39,597,956	
3	(가칭)서진학교	3. 강서구 4. 가양동 1477	토지	5,000.0	-	본청 (학교지원과)
			건물	7,805.0	13,846,070	
			소계			
합계			토지	15,377.0	21,140,956	
			건물	21,886.5	35,702,011	
			소계		56,842,967	

#### ○ 취득(증축)

연번	사업명	소재지	면적 (㎡)	금액 (천원)	소속 기관
4	제2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건립	성동구 마장동 556	1,800.0	3,989,000	본청 (학교혁신과)
5	서울원목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중랑구 숙선옹주로 109	994.0	2,495,934	동부
6	서울하늘초등학교 보통교실 증축	마포구 월드컵북로 502-14	1,176.0	2,176,840	서부
7	서울홍은초등학교 급식실 및 체육관 증축	서대문구 세검정로 105	1,460.0	3,230,220	서부
8	서울가곡초등학교 급식실 및 교실 증축	강서구 공향대로 36길 74	2,084.0	4,520,300	강서양천
9	서울공항초등학교 보통교실 증축	강서구 마곡서1로 68	1,720.0	2,902,740	강서양천
10	신림중학교 급식실 및 체육관 증축	관악구 신림로 40	1,567.6	3,945,547	동작관악
합계			10,801.6	23,260,581	

○ 취득 및 처분(교환, 기부채납)

연번	사업명	소재지	내역	면적 (m <sup>2</sup> )	금액 (천원)	소속 기관
11	서울대방초등학교 토지교환 및 기부채납	영등포구 여의대방로35 길 14	교환	1,176.0	3,175,371	남부
			기부채납	1,440.0	3,515,131	

## I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계획안은 2016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443호로 제출되어 2016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학교신설 3건, 제2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 건립 1건, 체육관 증축 1건, 보통교실 증축 2건, 급식실 및 교실 증축 1건, 급식실 및 체육관 증축 2건 및 토지교환 및 기부채납 1건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학교신설의 건(3건)

##### 1) 가칭)양재유치원 신설

- 가칭)양재유치원(이하 ‘양재유치원’) 신설 건은 유치원이 부족한 강남7 취학권역(서초1,2,3,4동, 양재1동)의 취원 대상 유아를 동 지역내에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양재초등학교 내 유희부지를 활용하여 7학급(유아 132명 수용 예정) 규모의 단설유치원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 현재 양재유치원의 설립 예정지인 강남7권역은 2018학년도 기준으로 유치원의 유아수용률(정원/취원대상)은 31.2%이며, 어린이집을 포함해도 72.9%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특히 같은 해 동 권역의 사립유치원의 경우 정원은 1,184명인데 비해 취학수요는 1,352명으로 사립유치원의 정원만으로 모든 유아를 다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정원이 280명인데 비해 취학수요가 2,336명으로 많은 학부모들이 공립유치원을 선호하지만 실제로 공립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비율은 1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이런 점에서 강남7 취학권역내 양재유치원 설립은 낮은 수준에 있는 유아수용율을 증대시키고 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단설유치원은 병설유치원에 비해 유아교육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환경과 독립된 운영체제를 갖는다는 장점은 있으나, 학교신설에 따른 건립비용 부담이 높으므로 단설유치원을 확대할 경우 경제성 및 공공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 유치원 시설 정원 과부족 현황**

(단위 : 명)

취학 권역	'18 취원대상 유아수				'17 유치원 시설 정원			'18 취학수요			과부족 (정원-취학수요)		
	3세	4세	5세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강남7	1,342	1,540	1,633	4,515	280	1,184	1,464	2,336	1,352	3,688	Δ2,056	Δ168	Δ2,224

[표-2] 2017~2018학년도 취원수요 반영 유아수

(단위 : 명)

취학 권역	대상 연령	취원 대상 유아수	2017			취원 대상 유아수	2018		
			취학수요				취학수요		
			공립	사립	소계		공립	사립	소계
강남7	만3세	1,566	780	415	1,195	1,342	737	231	968
	만4세	1,660	1,024	495	1,519	1,540	795	507	1,301
	만5세	1,662	1,115	309	1,424	1,633	804	614	1,417
	계	4,888	2,919	1,219	4,138	4,515	2,336	1,352	3,686

2) 가칭)항동초등학교 신설

- 가칭)항동초등학교(이하 ‘항동초등학교’) 신설 건은 구로구 항동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학생 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신설될 항동초등학교에서는 47학급(특수 2학급 포함)의 1,258명(특수 12명 포함) 학생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 현재 항동 지구 인근학교인 오정초 학생들의 실제 통학거리는 1.85 km(소요시간 31분)이고, 천왕초 학생의 경우 2.8km(소요시간 46분)로서 초등학교 통학거리 기준인 1.5km를 초과하여 통학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 더욱이 1986년에 건축된 오정초는 일반교실 26실 규모의 학교로서 교사동 증축 및 학생 추가 배치가 어려운 상황이고, 천왕초는 향후 약 5년간 학생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체 학생배치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구로구 항동 공공주택지구 내 증가 학생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항동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증가 학생을 항동초 신

설을 통해 수용하고자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신규로 설립되는 향동초등학교의 경우 동 지구내 입주가 완료되는 2021년에는 학생 수가 당초 계획된 1,258명 보다 증가된 1,264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동 지구내 학생수용계획에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3] 인근 학교 현황**

(단위 : 명, 학급)

학교명	2016학년도 학급편성			통학거리			교실증축		비고
	학생수	학급수	급당 인원	거리 (km)	소요시간(분)		가능 여부	검토의견	
					도보	대중교통			
오정초	512	24	21.3	1.85	31	20	불가	부지 협소 및 1986년도 건물로 수직증축 어려움	통학거리 1.5km 초과
천왕초	1,190	48	24.8	2.8	46	39	불가	부지 협소 및 5층 건물로 수직증축 어려움	

**[표-4] 향동초 및 인근학교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단위 : 명, 학급)

학교명 (가칭)	구 분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학생배치지표상 연도별 급당인원)						비고			
		2016 (27)	2017 (26)	2018 (26)	2019 (26)	2020 (26)	2021 (26)				
향동초	학생수			674	1130	1246	1264				
	학급수			30	45	45	45				
	급당인원			22.5	25.1	27.7	28.1				
오정초	학생수	512	502	504	526	516	521	통학거리 1.85km			
	학급수	24	23	23	23	23	23				
	급당인원	21.3	21.8	21.9	22.9	22.4	22.7				
천왕초	학생수	1176	1학기	2학기	1494	1491	1438	1337			
	학급수	48	1406	1406					54	54	54
	급당인원	24.5	48	54							
			29.3	26.0				24.8	통학거리 2.8km		

**[표-5] 향동초등학교 신설 관련 추진경과**

일 자	내 용
2010.05.06.	서울향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국토부 고시 제2010-317호)
2010.11.15.	국토부 고시 제2010-806호 - 초 11,271㎡(향동 158-1)
2013.11.19.	학교용지 확보 필요 회신(교육지원청→국토교통부) - 초(약1,314명, 14,791㎡이상)
2014.02.14.	향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 협의(국토교통부 →교육지원청) - 초(9,120→9,991㎡)
2014.03.05.	향동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 협의 회신(교육지원청→국토교통부) - 초(9,991㎡ 면적수용)
2014.04.21.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부 고시 제2014-203호: 학교용지 위치 및 면적(변경) - 초(11,271→9,991㎡, 향동 160),
2015.10.27.	향동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착공 알림(SH공사→교육지원청) - 공사기간: 2015.10.27.~2018.11. 3.
2015.12.21.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 부대의견: 개교시기 조정 및 학교규모 조정
2016.01.25.	향동지구 공동주택 입주시기 조정 알림(SH공사→교육지원청) - 공공주택 2018.5월~9월, 민영주택 2019. 1월 이후
2016.02.02.	<b>향동초 개교시기 및 학교규모 조정(1차)</b> - 개교시기: 2018. 9월 - 학교규모: 1,345명→1,286명, 54학급→52학급(특수2 포함)
2016.04.19.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통과(사업규모 축소)”
2016.05.17.	<b>향동초 설립 규모 조정(2차)</b> - 설립규모: 학생수 1,286명, 52학급→48학급*(특수2 포함) * 교실 67㎡기준 최대 수용 가능인원 28명과 서울시교육청 배치지표 26명을 감안하여 급당인원 26명→28명으로 조정
2016.06.21	<b>향동초 설립 규모 조정(3차)</b> - 설립규모: 학생수 1,246명, 48학급→47학급*(특수2 포함) * 교실 67㎡기준 급당인원 조정

3) 가칭)서진학교 신설

- 가칭)서진학교(이하 “서진학교”) 신설의 건은 강서구 가양동의 舊 공진초 이적지를 활용하여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6학급, 전공과



4학급 등 총 16개 학급 106명의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 현재 서진학교 설립예정부지가 속한 강서구에는 총 672명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있고, 이중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207명이며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465명입니다.

이중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207명중 강서구내 교남학교에서 수용하고 있는 강서구내 지적장애 학생은 86명(41.5%)에 불과하고<sup>1)</sup>, 나머지 지적장애학생 75명(36.2%)은 구로구의 서울정진학교로 59명이, 성베드로학교에 15명이, 서울정문학교로 1명이 배치되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465명중 32명이 특수학교의 진학을 희망하고 있으나 특수학교 부족으로 부득이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6] 강서구 거주 특수교육 대상 학생 현황**

(단위: 명, 기준 : 2016.9.1)

특수학교 재학생					일반학교 재학생		합계
강서구 내 특수학교 (교남학교)	강서구 외 특수학교			지적장애 외 타 장애영역 학교 재학생	특수 학급	일반 학급	
	정진학교 (구로구)	성베드로 (구로구)	정문학교 (관악구)				
86	59	15	1	46명	338명	127명	672

※ 정진, 성베드로 통학버스 운행현황: 11km~30km (최대 1시간 30분)

-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및 제6조2)에 따르면

1) 현재 강서구에는 지적장애 16학급, 정원 102명인 교남학교가 있는 바, 이곳에는 강서구에 거주하는 학생 86명과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 20명, 그리고 기타지역 거주자 2명 등 현재 108명의 장애학생이 재학 중에 있어 이미 정원을 초과한 상태임.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서진학교 설립은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지적장애 학생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함을 개선하고 지적장애 학생들에게 특수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만 설립예정부지 인근의 지역주민들은 특수학교인 서진학교의 신설이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장애학생의 돌발행동 우려에 따른 안전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학교설립에 지속적인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인 바(붙임1 참조)<sup>3)</sup>

서울시교육청은 서진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의 협의체 구성, 인센티브 부여 및 주민우려 불식을 위한 방안 마련 등 지역주민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나. 증축의 건(7건)

### 1) 제2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 건립

- 제2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이하 ‘제2창의센터’)는 「학교문화예술교육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교육감·강서지역 주민대표 면담(2016.9.26.)

주민대표 요구사항

-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에 우선 설립
- 지역적 특성상 한방의료원이 적합
- 강서구 가양동 인근 특수기관(장애인 복지시설) 과밀
- 폐교부지 매각, 그린벨트 해제 등 서울시교육청 자체 해결 의지 없음이 문제
- 청사이전 부지(수도여고 이전부지)에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 요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창의인성교육 거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동명초등학교내 별관동을 활용하여 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동 사업은 이미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나(2015.12.21.), 제2창의센터 설립을 위한 동명초 별관동이 1967년 건축된 비내진설계 건물로 밝혀짐에 따라,

이에 대한 정밀진단과 구조보강 설계비 및 시공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어 사업비가 당초 보다 5억 8백만원(12.7%)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제2창의센터 증축동의 위치가 학교내 560번지에서 556번지(테니스장)로 변경되고, 동 증축동에 공연을 위한 전문공연장의 설치와 그에 따른 필수 관리실 및 공연전 연습 등을 위한 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증축동의 면적이 400 $m^2$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당시 보다 규모 및 총사업비가 29억 4천만원(73.6%)이 증가되어 서울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다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sup>4)</sup>.

---

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표-7] 제2서울창의인성센터 변경내역

(단위: m<sup>2</sup>, 천원)

구분		기본안	1차 변경	2차변경	증가	
<b>총규모</b>		<b>2307.2</b>	<b>2307.2</b>	<b>2707.2</b>	<b>400</b>	
건물	별관동 (리모델링)	규모	907.2	907.2	907.2	-
		설계방식	교실활용	-	대수선	-
	증축동	규모	1,400	1,400	1,800	400
		설계방식	수평증축	-	수평·수직 증축	-
<b>총사업비</b>		<b>3,992,278</b>	<b>4,500,000</b>	<b>6,932,000</b>	<b>2,939,722</b>	
건설비(리모델링, 증축)		3,742,278	4,250,000	6,000,000	2,257,722	
학생안전관련 시설비		-	-	562,000	562,000	
집기 구입		246,450	246,450	350,000	103,550	
기획 및 실무추진단 운영		3,550	3,550	20,000	16,450	

- 현재 제2창의센터의 총사업비는 69억 32백만원으로, 2016년에 특별교부금 30억 42백만원이 교부되어, 그 중 설계비로 2억 3천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28억 12백만원은 명시이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인 교육청 자체부담금 38억 9천만원은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사업비 증가는 오래된 건물을 활용함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며,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비용의 증가인 바,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또한 제2창의센터의 증축동은 당초 학교내 560번지에 증축하려 했으나, 동 부지가 지번경계 미측량으로 대지경계선이 불분명하여 현재 교육감과 일반사인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바,

제2창의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증축동을 동명초 별관동 뒤편인 씨름장(556번지)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만 제2창의센터의 규모 및 사업비의 증가는 최초 동 센터의 계획 단계에서 별관동에 대한 안전성 검토와 증축동의 부지 확보 등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었고, 이에 따라 공기가 지연되고, 추가로 다양한 요구들이 증가하면서 사업비가 증가되었는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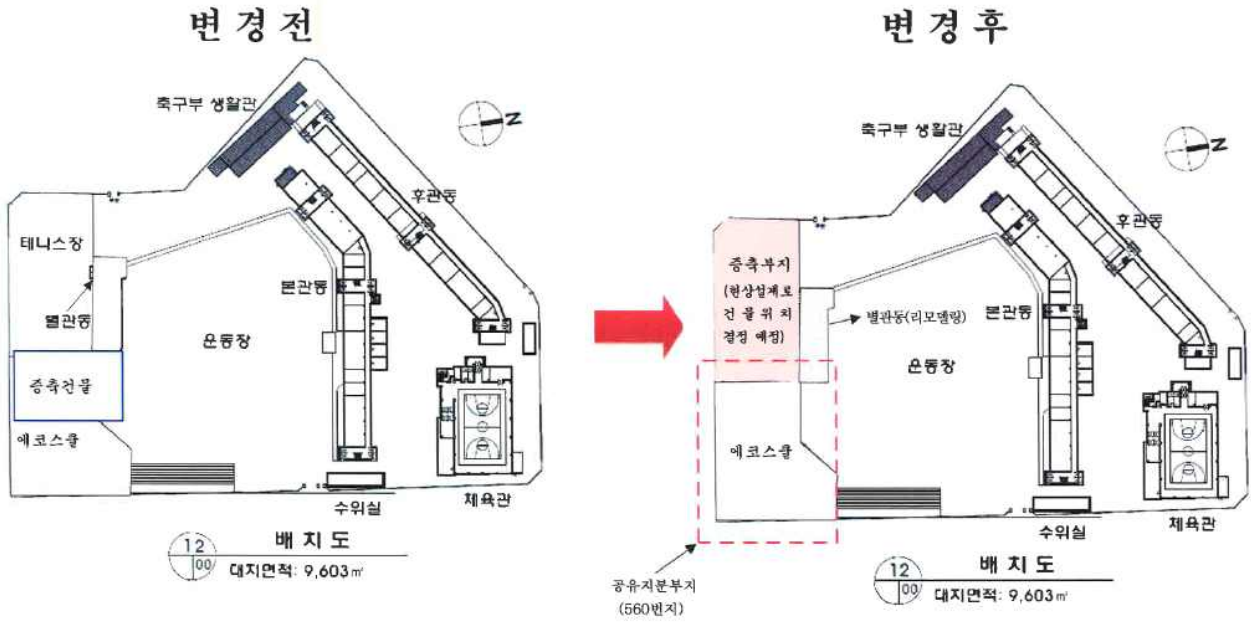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대상건물 및 증축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와 사업목적과 관련한 전문가 등으로부터의 사전 의견 수렴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표-8] 예산 구분**

(단위: 천원)

연도	확보현황	자체재원	특별교부금	합계	비고
2016	확보	0	3,042,000	3,042,000	건설비
2017	예정	2,958,000	0	2,958,000	건설비
	예정	562,000	0	562,000	학생안전시설비
	예정	350,000	0	350,000	자산취득비
	예정	20,000	0	20,000	운영비
합계		3,890,000	3,042,000	6,932,000	

[표-9] 제2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 부지 위치 변경 배치도



## 2) 체육관 증축(원목초)

○ 원목초등학교 체육관 증축의 건은 우천시 학생들의 체육활동 및 교육 활동을 위한 공간 부족문제 해결과 지역사회에 문화 및 생활 체육편의시설을 제공할 목적으로 운동장 남측에 별동으로 체육관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 동 증축의 건은 금번 정례회에 선순위의 면목중 체육관 증축이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 제출됨에 따라 1순위 사업이 되었고, 서울시교육청은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교육재정과-22674, 2016.10.31.)에서 동 증축건의 추진이 결정되었는바,

동 사업은 “체육관 증축 재정투자 중·장기 추진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절차상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10] 체육관 증축 우선순위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대상 학교	신내초 동원중	용두초 전동중	면목중	원목초	군자초	신현초	동원초

3) 보통교실 증축(하늘초, 공항초)

- “하늘초등학교 교실 증축의 건”은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하늘초등학교의 급당인원이 2016년 현재 30.3명으로 혁신학교 편성기준인 학급당 25명<sup>5)</sup> 보다 높고, 서울시교육청 학급편성 기준인 27명을 초과하여 과밀학급으로 운영됨에 따라 학급 과밀 해소를 위해 일반 교실 8학급을 교사동 뒤편에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또한 “공항초등학교 교실 증축의 건”은 현재 26.5명인 급당인원이 마곡 9단지 입주시기인 2019년 7월 이후 2020년에는 45.2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반교실 12실을 증축하여 과밀 학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표-11] 중장기 학생배치 계획**

(단위: 명)

학교명	2016학년도 학급편성			구 분	중장기학생배치계획				
	학생수	학급수	급당인원		2017	2018	2019	2020	2021
하늘초	1,271	42	30.3	증축전	32.0	32.2	32.8	30.4	26.9
				증축후	32.0	27.1	27.5	25.6	24.5
공항초	1,112	42	26.5	증축전	25.6	27.3	42.3	45.2	49.7
				증축후	25.6	27.3	34.7	37.2	39.9

- 하늘초등학교와 공항초등학교의 보통교실 증축은 급당 인원 감소를

5) 초등학교 학생배치계획(서울시교육청)

2016	2017	2018	2019	2020	혁신학교	비고
27	26	26	26	26	25	교육부 34명

통해 학생들의 학습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면 타당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 그러나 하늘초의 경우 ‘초등학교 통학구역 협의’<sup>6)</sup>에 따라 2001학년부터 경기도 고양시 대덕동 일부(1~8통)까지 통학구역으로 포함되었고, 이로 인해 고양시 대덕동 학생들이 하늘초로 전·입학하여 과밀학급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바 현재 고양시 학생 수가 전체 학생 수 대비 13%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6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던 국방대학교 이전이 2017년 8월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하늘초로 입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2017학년도에도 하늘초의 과밀학급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이와 같은 하늘초의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고양교육지원청에 공동통학구역의 해제를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으나<sup>7)</sup>, 고양교육지원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신설학교 설립 시까지 공동통학구역의 현행 유지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며(붙임2 참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동통학구역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교육민원과-7885(2016.11.21.)).

- 그러나 의무교육 대상자의 학교배치는 자치단체 권한사항으로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양시 학생의 배치로 인해 하늘초의 학급 과밀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통교실의

6)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81480-1841(2000.8.4.)호 >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동 3-8통 거주 아동들의 통학불편 해소를 위하여 국방대학교 인근 민영주택 건설시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해당 지역의 학생들을 수용한다는 한시적 조건으로 대덕동 3-8통을 경기도 덕은초와 서울 수색초 공동통학구역으로 협의함

7) 서울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12969(2013.10.16.), 동 행정지원과-5908(2014.5.13.), 동 행정지원과-4733(2015.5.8.), 동 행정지원과-8396(2015.9.9.), 동 행정지원과-5574(2016.5.30.), 동 행정지원과-9947(2016.10.13.), 동 행정지원과-10745(2016.11.2.)



증축에 앞서 고양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대책 마련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8).

특히 하늘초 졸업생이 상암중으로 배정받게 됨에 따라 상암중에 배정받아야 하는 상암동 학생들이 인근 성산동 중암중으로 배정을 받는 현상이 발생되어 상암동 지역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등의 불편을 발생시키고 있는 바,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여 서울시 학생들이 학급과 밀화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12] 하늘초 상암동 및 대덕동(국방대) 학령인구 수 분포**

(단위: 명)

구분		2009 년생 (1학년)	2008 년생 (2학년)	2007 년생 (3학년)	2006 년생 (4학년)	2005 년생 (5학년)	2004 년생 (6학년)	2010년생 (17년 입학)	2011년생 (18년입학)	2011년생 (18년입학)	2011년생 (18년입학)	2011년생 (18년입학)
마포구상암동	월드컵 9단지	66	78	63	51	61	48	77	58	49	27	26
	월드컵 10단지	70	81	60	34	36	39	66	32	23	21	11
	월드컵 11단지	43	41	42	29	51	42	31	35	27	20	8
	월드컵 12단지	54	55	49	30	41	40	46	48	30	27	27
	기타지역	1	2	4	1	0	3	0	2	0	1	2
소계		234	257	218	145	189	172	220	175	129	96	74
고양시 대덕동		30	34	28	44	28	24	28	28	42	34	37
총계		264	291	246	189	217	196	248	203	171	130	111

#### 4) 급식실 및 교실 증축(가곡초)

- 가곡초등학교 급식실 및 교실증축의 건은 마곡지구 개발로 인해 인근 공진초의 학생이 증가됨에 따라 이를 분산수용하고 노후화된 급

8) 고양시 학생의 하늘초등학교 수용은 임시적인 조치였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덕동 주민들이 인근 수색초로의 분산수용을 거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식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가곡초의 본관동 왼쪽에 별동건물을 증축하여 2층에 급식실, 3층에 일반교실 6실, 4층에 특별교실 6실을 증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 현재 가곡초는 학급당 인원이 29.8명(서울시교육청 학급당 인원 27명)에 달하는 과밀학급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가곡초의 급식실은 1997년 설치되어 노후화가 심한 상태로 현재 교실배식이 이루어지고 있어 위생적인 급식 제공에 문제가 있어왔습니다.

○ 더욱이 마곡지구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연도별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중 마곡개발지구 13단지(힐스테이트마스터) 입주가 종료되는 시점인 2019년 이후에는 인근 공진초의 학생수가 2020년에 1,875명(급당인원 34.7명), 2021년에 2,155명(급당인원 39.9명)이 되어 과밀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외에 공진초를 통학구역으로 하는 마곡개발지구 15단지(마곡엠밸리 15단지)의 학생들을 가곡초로 배정할 경우 현재로도 과밀상태에 있는 가곡초의 과밀화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판단되는바 마곡지구 내 학령인구 증가에 대비한 교실증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또한 급식실 증축도 그 필요성이 일찍부터 인정되어 2012년 추경까지 편성되었으나 당시 공간부족으로 지연되어 왔던 바, 금번에 교실 증축과 함께 급식실을 증축하려는 것은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교육청은 학교에 편입되는 2,768㎡의 부지를 수용하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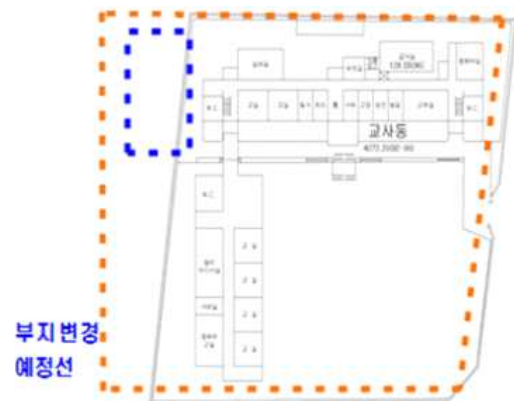
2017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17억 9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아직 동 부지가 교육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황인바 동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9).

[표-13] 가곡초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단위 : 명, 학급)

학교명	2016학년도 학급편성			구 분	중장기학생배치계획 (2017~2021)					
	학생수	학급수	급당인원		2017	2018	2019	2020	2021	
가곡초	896	30	29.8	증축전	학 생 수	899	912	881	815	775
					학 급 수	30	30	30	30	30
					급당인원	30.0	30.4	29.4	27.2	25.8
				증축후	학 생 수	899	912	881	815	1,075
					학 급 수	30	30	36	36	36
					급당인원	30.0	30.4	24.5	26.6	29.9
공진초	660	31	21.3	가곡초 증축전	학 생 수	1,314	1,445	1,634	1,875	2,155
					학 급 수	50	50	54	54	54
					급당인원	26.3	28.9	30.3	34.7	39.9
				가곡초 증축후	학 생 수	1,314	1,445	1,634	1,875	1,875
					학 급 수	50	50	54	54	54
					급당인원	26.3	28.9	30.3	34.7	34.3

[표-14] 가곡초 학교 용지 현황도



9) 학교 용지 증축 부지 확보

-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학교 용지 수용과 관련하여 4년간(2013년~2016년) SH공사와 협의 (2,768㎡)한 결과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원가의 20%로 공급하기로 함.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경제과-777(2016.8.22.), 서울특별시 서남권사업과-3337(2016.10.5.)

5) 급식실 및 체육관 증축(홍은초, 신림중)

○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홍은초와 신림중학교 급식실 및 체육관 증축의 건은 위생적인 급식환경 제공과 우천시 체육활동 및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 먼저 신림중학교 급식실 및 체육관 증축의 건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12.11.22.)에 따라 체육관 증축이 승인되어 2016년 본예산에 체육관 설계비 2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급식시설 및 학생식당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를 체육관 2층에 증축하고자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 급식실 및 학생식당의 경우에는 ‘학교급식환경개선 중장기 계획’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급식실 및 학생식당을 증축하고 있는 바,

동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홍은초의 경우 2016년 급식환경 개선사업 증축순위 2순위이나 선순위인 중암중이 사업 추진중에 있어 선순위가 되었고, 신림중의 경우 1순위 사업으로서 사업 추진 순위 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15] 급식실 증축 우선 순위(2016년 기준)

학교명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우선 순위
홍은초	중암중, <b>홍은초</b> , 불광중, 북가좌초, 중암고, 서강초, 연신초, 신진자동차고, 성서초, 연천중, 아현초, 마포초, 성산중, 송실고
신림중	<b>신림중</b> , 행림초, 당곡초, 청룡초, 보라매초, 강남중, 신남성초, 난곡초, 상도중

○ 다음으로 홍은초 증축의 건(신규)은 2016년도 서울시교육청 본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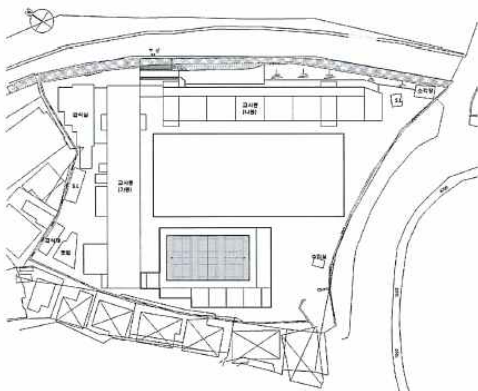
산에 체육관 증축에 따른 설계비 7천만원이 반영되었지만,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사업과 병행하여 진행하기 위해 현재 설계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러나 동 사업은 2016년도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2016.7.22.)에서 기존 교사동을 철거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 및 대응투자 확보를 이유로 '보류'된 바 있으며, 교사동 철거 없이 서대문구청으로부터 대응투자 예산 2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2016.10.20.)에서 '가결'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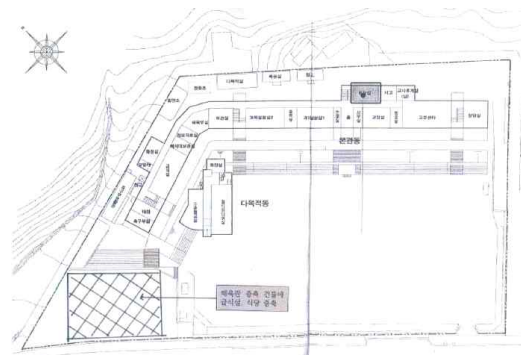
○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절차상 위법한 측면이 있으나,

'체육관 증축 재정투자 중·장기 추진계획'에 따라 지자체 등 외부기관의 지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외부재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증축을 우선 지원하고 있는바 다소 이해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16] 증축 배치도(홍은초, 신림중)**



<홍은초 증축 배치도>



<신림중 증축 배치도>

## 다. 교환 및 기부채납의 건(대방초)

○ 대방초등학교 토지교환 및 기부채납의 건은 영등포구청이 ‘신길5재 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함에 있어 대방초의 학교부지 정형화를 인가조건으로 제시함에 따라 교육청이 학교용지 일부와 신길5재정비조합(이하 ‘조합’) 소유 부지를 교환하고 일부 기부채납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sup>10)</sup>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sup>11)</sup>에 따르면 현재 대방초(377㎡) 및 인근 교육청 소유 일반토지(863㎡) 1240㎡ 중 환지분(64㎡)를 제외한 1,176㎡와 조합 소유 부지 2,616㎡는 교환재산가액 비율이 47.4%<sup>12)</sup>에 해당하여 일대일 교환이 어려운 상태인바,

조합에서 교육청 부지와 조합 부지의 일부(1,176㎡)에 대해서는 일대일로 교환하고 나머지 조합부지 중 1,440㎡는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며, 그 외 나머지 부지 64㎡는 환지 후 학교부지로 편입하는 것으로 제안해 옴에 따라 교환 및 기부채납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방초의 학교부지면적은 현행 16,537㎡에서 18,840㎡로 2,303㎡(13.9%) 증가하게 될 예정입니다.

○ 따라서 동 건에 따른 토지 교환 및 기부채납은 증가된 부지면적 만

10) 제39조(교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여 교환을 요청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11) 제44조(교환) ②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해서는 아니 된다.

12) 교육청 소유 토지면적 1,176㎡의 공시지가는 2016.1.1.기준 3,175,371천원이고, 조합측 소유 토지면적 2,616㎡의 공시지가액은 6,688,502천원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제7항 및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출)

큼 공유재산(공시지가 기준 35억 13백만원)이 증가하고, 동 재개발 사업 이후 교육시설 수요 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학교 부지를 확보하게 되며, 학생들의 활동 공간의 확대로 교육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서울시 교육청은 동 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물 철거 및 작업에 따른 소음과 진동 및 먼지 등으로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합측과 사전에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학교내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후속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17] 대방초 중장기학생배치계획 및 학교시설 현황**

(단위 : 명)

2016학년도 학급편성			보유교실현황				구 분	중장기학생배치계획 (학생배치지표상 연도별 급당인원)					
학생수	학급수	급당인원	일반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기타지원		2016 (27)	2017 (26)	2018 (26)	2019 (26)	2020 (26)	2021 (26)
403	19(2)	20.7	21	20	6	18	학생수	403	576	604	605	585	577
							학급수	19	25	26	26	26	25
							급당인원	20.7	22.7	22.9	22.9	22.2	22.7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칠것습니다.

## [붙임-1] 서진학교 설립 진행 경과

일 자	내 용
2013. 8.13.	서울 특수교육 현안과제 및 대책 수립(학교생활교육과) - (내 용) 동부 및 강서(추가) 지역 특수학교 설립
2013.10.30	특수학교 신설추진 세부시설조성 협의(학교생활교육과) - (내 용) 동부 및 강서 특수학교 세부시설, 필요교실, 소요액 등 최종협의 완료
2013.11. 8.	특수학교 신설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의뢰
2013.11.14	자체 재정투자 심사 통과
2013.11.25. ~12.19	행정예고 시행(25일간, 총 참여인원 13,345명) - (내 용) 참여인원 7,755명 (찬성 6,548명, 반대 및 도서관 요구 1,207명)
2013.12. 4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삭제 및 보류(교육위원회)
2013.12. 6	2014년도 본예산 설계비 10억원 삭감(교육위원회)
2014. 1.14	재정투자심사 우선 유보 요청 - (내 용) 공립 특수학교 신설 사업에 대한 사회적인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의 반대(장애)요인을 저감하여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정투자심사를 유보 요청
2014. 2. 5	공립 특수학교 신설계획 재검토 결정(교육청)
2014. 8.21.	공립 특수학교 신설계획 추진(안) 재수립 (교육청) - (내 용) 공진초 이적지 내 도서관 설치 병행 결정
2014. 10.	공진초 인접 LG자이(790세대) 주민 반대의견 제출 - (내 용) 반대 의견 제출 1,444명
2015. 5.~6.	강서 및 동부지역 지역 주민설명회 추진 무산 - (무산사유) 메르스 발병에 따라 모든 집회 연기 및 취소 사태 발생
2015. 8.	공진초 이적지 활용방안 임대 요청 (강서경찰서→강서교육지원청) - (내 용) 강서경찰서 청사 신축으로 2년 6개월간 사용 요청 (연/1,200,000천원의 사용료 수익 예상)
2015. 9.30	강서구 마곡지구 내 부지 확보 검토 요청(교육청→SH공사, 서울시) - (SH 유선 회신) 마곡지구 기 분양자 반발을 우려하여, 사전협의 요구 - (서울시 회신) 해당 부지의 농업역사박물관 조성규모 미확정으로 분할가능 여부 판단 불가 회신
2015.11.27.	SH-교육청 특수학교 설립 추진 협의 - (내 용) 마곡지구 내 부지확보 요청 - (SH공사) 계획에 없던 내용으로 입주(예정)주민 반대에 따라 부지 제공 어려움, 주민동의를 전제로 긍정적 검토 가능하나, 다방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입주민협의체의 반대 민원우려로 부지 제공 어려움
2016. 1.26.	SH-교육청 특수학교 설립 추진 협의 - (내 용) 인사이동에 따른 추진 경과 설명 및 마곡지구 내 부지확보 요청 - (SH공사) 해당 부지(편익용지,S5)는 서울시에서 공원화(농업박물관)를 예정하고 있으며 인접하여 초고압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학교용지로 적합하지 않음
2016. 2. 5.	마곡지구 내 부지 확보 재검토 요청(교육청→서울시) - (2.16. 서울시 회신) 기 회신한 답변과 같음
2016. 3. 16.	서울시-교육청 마곡지구 내 부지 확보 협의 - (교육청) 마곡지구 내 부지확보 요청 - (마곡조성과) 해당 부지는 도시농업과에서 사업을 추진중이며,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서 분할 여부 판단 불가능
2016. 3. 17.	공진초 이적지 활용방안 임대 재요청 (한정애 국회의원실,강서경찰서) - (내 용) 강서경찰서 청사 신축으로 2년 6개월간 사용 요청 (연/1,200,000천원의 사용료 수익 예상)
2016. 4. 14	서울시-교육청 마곡지구 내 부지 확보 협의 (마곡추진단장) - (교육청) 마곡지구 내 부지확보 요청 - (마곡추진단장, 마곡조성과) 1. 해당 용지 인근에 국내 최대 식물원이 입지 예정으로 국내·외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전체 공원의 기능 및 효용성 등을 감안할 때 특수학교 입지로는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함



	<p>2. 또한 서울시 농업조성과 및 강서구청에서 해당 용지 전체를 농업박물관 [도시농업체험시설] 추진을 위한 용역을 준비중임</p> <p>3. 인근 유수지를 40%정도 복개하여 주차장, 주민체육시설 등으로 활용 예정임</p> <p>4. 강서구 방화대교 남단 인근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이전 예정임</p>
2016. 4. 18	<p>강서구청-교육청 마곡지구 내 부지 확보 협의 (기획재정국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청) 마곡지구 내 부지확보 요청</li> <li>- (기획재정국장, 일자리경제과)</li> </ul> <p>1. 상반기에 마곡지구 내 도시농업박물관 및 테마파크 관련 사업을 조성 위한 용역 발주 예정임 (17년 착공 목표)</p> <p>2. 서울시 도시농업과에서 내부적으로 기본 계획을 세워 예산을 교부하였음으로 강서구청에서 부지 제공 및 분할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움</p>
2016. 4. 20.	<p>서울시-교육청 마곡지구 내 부지 확보 협의 (경제진흥본부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청) 마곡지구 내 부지확보 요청</li> <li>- (경제진흥본부장, 도시농업과장)</li> </ul> <p>1. 마곡지구는 700여년 농경 문화의 역사적 가치를 함유하고 있어 중앙공원과 연계할 수 있는 현 부지로 선정하였음</p> <p>2. 또한 양천향교, 허준박물관 등과 연계한 테마파크 및 농업박물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편익용지 토지 전체를 사용할 예정으로 토지 분할은 어려움</p>
2016. 4. 20.	<p>마곡지구 내 부지 확보 협의 (국회의원 김성태 의원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청) 마곡지구 내 부지확보 불가시 공진초이적지 특수학교 설립 예정</li> <li>- (김성태의원실 비서관) 보건복지부 2016년 본예산에 타당성조사 등을 위한 용역비를 반영해 둔 상태로 공진초이적지는 국립한방의료원 설립을 염두해 두고 있음</li> </ul>
2016. 4. 29	<p>강서구 내 특수학교 설립 관련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청) 마곡지구 내 부지확보 불가시 공진초이적지 특수학교 설립 예정</li> <li>- (김성태 의원) 대체부지를 확보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음</li> </ul>
2016. 7. 28	<p>강서구 내 특수학교 설립 관련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청) 지역적 특색(한방)과 특수학교 공존 방안 설명</li> <li>- (김성태 의원) 공진초 이적지에 국립한방의료원 설립 당위성 설명, 마곡지구 내 편익용지가 특수학교 부지로 타당</li> </ul>
2016. 8. 5.	<p>강서구 내 특수학교 설립 관련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청) 특수학교 설립의 필요성 설명</li> <li>- (서울시) 마곡지구는 농업역사박물관 조성계획이 이미 정해져 있으며 공간이 부족함, 정보화진흥원 부지 내 어울림플라자 용역 중으로 병행하는 방안은 검토 가능</li> <li>- (김성태 의원) 공진초 이적지는 지역 주민의 반대가 심함, 공진초 이적지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국립한방의료원 설립과 한방산업 특화지역 조성이 필요함, 마곡 지구내 농업역사박물관 조성 부지 중 일부를 특수학교 부지로 할애 요청</li> </ul>

## [붙임-2] 하늘초 공동 통학구역 협의 경과

구분	서울서부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
2010년	<p>&lt;재정과-11244(2010.08.23.)호&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3.12. 국민권익위원회 협의로 대덕동 학생들은 2011.3월부터 하늘초에 취학하여 상암중에 배정되도록 협의한 바 있음</li> <li>○ 하늘초와 상암중 수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됨</li> <li>○ 2015년 향동택지개발지구내 신설교에서 대덕동 학생들을 수용해주기 바람</li> </ul>	<p>&lt;관리과-8723(2010.8.9.)&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덕동 주민 건의에 따라 대덕동 초중학교 학구설정에 대한 추진경과 및 예정 사항 회신 요청</li> </ul>
2012년	<p>&lt;행정지원과-13086(2012.9.21.)호&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3.1.기준 대덕동1-8통 통학구역을 <b>덕은초 단독학구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b></li> <li>○ 대덕동 거주 서울하늘초 학생들이 <b>고양시 관할 중학교로 배정될 수 있도록 요청</b></li> </ul>	<p>&lt;경영지원과-13090(2012.10.19.)호&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양향동지구와 덕은도시개발지구 사업 추진시 신설교를 통하여 학생 수용이 계획되어 있음</li> <li>- 고양향동지구, 덕은도시개발지구 개발 사업 추진일정 및 국방대 이전 시기 알림</li> </ul>
2013년	<p>&lt;행정지원과-12969(2013.10.16.)호&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학년도부터 서울하늘초 과밀학급 편성 예정되고 상암중 중입배정에 어려움이 있음</li> <li>○ 고양향동지구 개발완료시와 개발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학생배치 문제 검토 및 회신 요청</li> <li>- 2018년 고양향동지구 개발시 : 신설초</li> <li>- 2018년 고양향동지구 미개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덕은초 단독통학구역 조정</li> <li>· 서울수색초 및 덕은초 공동통학구역 조정</li> </ul> </li> </ul>	<p>&lt;경영지원과-2013.12.17.)호&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양향동지구와 덕은도시개발지구 사업 추진시 신설교를 통하여 대덕동 학생들을 배치할 계획임</li> <li>○ 고양향동지구 개발완료 시에도 대덕동 일부의 경우 서울하늘초 통학이 용이한 면이 있어 추후 협의가 필요함</li> <li>○ 서울하늘초 졸업자는 2015학년도부터 고양시 관내 중학교에도 배정될 수 있도록 검토 예정임</li> </ul>
2014년	<p>&lt;행정지원과-5908(2014.05.13.)호&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하늘초, 상암중의 학급과밀이 예상되니 덕은초와 덕양중의 단독학구로 개정 바람</li> </ul>	<p>&lt;경영지원과-11040(2014.08.11.)호&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양향동지구와 덕은도시개발지구 사업 추진시 신설교를 설립하여 배치할 예정임</li> <li>○ 국방대가 2016.12월 이전 예정이므로 향후 하늘초 및 상암중의 수용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li> <li>※ 서울서부교육지원청 5학교군 과밀 해소 요청에 따라 2015학년도부터 대덕동에서 고양시 덕양중학구 통학 가능하도록 공동학구 설정</li> </ul>

구분	서울서부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
2015년	<p>&lt;행정지원과-4733(2015.5.8.)호&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하늘초, 상암중의 교육환경이 열악하니 덕은초와 덕양중의 단독학구로 개정 바람</li> </ul> <p>&lt;행정지원과-8396(2015.09.09.)호&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덕은도시개발지구 사업시 초중학교 신설 등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상암동 지역의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람</li> </ul>	<p>&lt;경영지원과-10489(2015.7.31.)호&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양향동지구와 덕은도시개발지구 사업 추진시 신설교를 설립하여 배치할 예정임</li> <li>○ 국방대가 2016.12월이전 예정이므로 향후 하늘초 및 상암중의 수용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li> </ul>
2016년	<p>&lt;행정지원과-5574(2016.5.30.)호&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하늘초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대덕동을 고양 덕은초와의 공동통학구역에서 해제할 것을 요청</li> </ul> <p>&lt;행정지원과-9947(2016.10.13.)호&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학년도부터 경기도 대덕동을 서울하늘초 통학구역에서 제외하고, 2016.12.01.부터 전학도 받지 않을 것임을 통보</li> <li>○ 2018학년도 부터 중학교 배치도 대덕동 학생들을 서울에 있는 중학교 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li> </ul> <p>&lt;행정지원과-10745(2016.11.02.)호&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 대덕동을 서울하늘초 통학구역에서 제외함을 재통보</li> <li>○ 2018학년도 중학교 배치부터 대덕동 학생들에 대한 배치방안도 전면 재검토 예정</li> </ul>	<p>&lt;경영지원과-14089(2016.10.28.)호&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양시 대덕동에 대한 서울하늘초 공동통학구역 해제 불가 알림</li> <li>○ 덕은도시개발지구 내 초·중학교 신설하여 학생들을 배치할 예정임.</li> <li>○ 신설학교 설립시까지 서울하늘초 공동통학 구역 및 중학교 배정 현행 유지 요청</li> </ul>

# 관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9조(교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여 교환을 요청한 경우

4.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교환을 할 때 교환하는 일반재산의 종류·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11.30.] [대통령령 제27621호, 2016.11.29., 타법개정]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제44조(교환) ① 법 제39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
- ②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16.8.4.] [법률 제13978호, 2016.2.3., 타법개정]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제1항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제3항에 따른 지원 또는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